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6 선고 2021가단3372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8 선고 2022나59875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6 선고 2021가단337270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

변론종결 2022. 6. 8.

판결선고 2022. 7. 6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현금 1억 5,700만 원에 관하여 2016. 9. 20. 체결된 증여계약을

74,518,9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74,518,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의 부친으로서, 피고의 모친이자 자신의 전 배우자인 C와 1984. 12. 07. 혼인한 후 2012. 11. 1. 부산가정법원 2012호668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2012. 11. 7.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.

나. 원고와 C 사이에 2012. 11. 26.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2년 제934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가 작성되었는데,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제1조(목적)

채무자(원고)는 2012. 11. 26. 부산가정법원1) 2012호6682 협의이혼에 의한 합의위자료 168,00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채무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(C)는 이를 승낙하였다.

제2조(변제기한과 방법)

2012년 1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 2,000,000원씩 84회 분할지급한다.

제8조(강제집행의 인낙)

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.

다. C는 2018. 2. 13.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1844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'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'이라 한다)을 받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8. 3. 23.부터 2020. 10. 26.까지

C에게 함께 72,652,920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51903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동의나 촉탁 위임 없이 C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과 동시에 C가 위 공정증서에 기해 추심한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1. 11. 3. ‘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, C는 원고에게 64,052,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(이하 ‘이 사건 판결’이라고 한다)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마. 한편 C는 2016. 9. 20.경 E에게 부산 연제구 F빌라 G호(이하 ‘이 사건 빌라’라고 한다)를 매매대금 1억 5,7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해 11. 18.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, 피고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H건물 I호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매수대금 중 1억 5,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

C가 2012. 11. 26.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고의 촉탁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공정증서에 기해 2018. 3. 23.부터 2020. 10. 26.까지 원고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함께 72,652,920원을 추심하고 그 중 86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74,518,991원(= 64,052,920원 + 64,052,920원 × 12% × 497일/365일, 원 미만 버림)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. 그 상태에서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억 5,7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,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고 그 바꾼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그 경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2016. 11. 18. 체결된 1억 5,7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억 5,700만 원 중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상당액인

74,518,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데,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C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개시한 2018. 3. 23.경 내지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2021. 11. 3.경 발생한 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C가 피고에게 1억 5,7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2016. 11. 18.경이어서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C가 2012. 11. 26.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C가 피고에게 1억 5,7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이미 4년여가 경과한 시점인 점, 원고의 책임재산 유무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여부나 그 시점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사실만으로 C가 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원고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.

3) 한편 원고는,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C와 매수인 E 사이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C가 피고에게 1억 5,700만 원을 지급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, C가 E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5,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(소비대차일

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), 그 당시 위 돈의 지급으로 C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증이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이성은

1) 위 공정증서에는 ‘부산지방법원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이는 ‘부산가정법원’의 오기로 보인다.